(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-참조1)

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번호	2033

발의년월일 : 2008. 10.

발 의 자 : 안계일의원 등 22 인

□ 제안이유

○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될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함.

□ 주요골자

○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한다. (안 제2조)

○ 심사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 (안 제6조)

○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(안 제12조)

성남시의회조례 제　　호

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소속 상임 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(이하 “의원연구단체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

②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.

제3조(명칭) 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「제○의원연구단체」라고 명칭을 부여하되,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신청한 명칭을 병용할 수 있다.

제4조(등록)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.

제5조(등록취소)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6조(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)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의회운영위원장 1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,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한다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,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대한 가부
2.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대한 가부
3.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대한 가부
4. 연구활동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을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)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성남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2조(공동참여)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활동계획의 변경)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